

		주무관	주거복지팀장	주택과장	도시발전국장	부시장	시장
등록번호	주택과-21115	남기정	이윤미	우원영	최경환	김충범	방세환
등록일자	2025. 5. 8.	예산팀장 이주은					
결재일자	2025. 5. 8.	협조자					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						

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 계획(안)

- ❖ 다양한 사회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
- ❖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

1 추진근거 및 배경

□ 추진근거

- 주거기본법 제14조(주거환경의 정비 등)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(금융지원)
-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6조(주거복지사업)
-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제7조 (임차인 지원사업)

□ 추진방향

- 주거위기가구의 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상향과 주거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실시
-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의 금융·주거지원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 실시

2

관련 현황

□ 일반현황

(2025. 3.기준, 명(가구),외국인제외)

구분	인구수	장 애 인		합계	저소득층				
		일반	저소득		생계급여	의료급여	주거급여	교육급여	차상위 계층
광주시	395,229 (173,763)	17,720	4,737	30,512 (21,494)	6,431 (5,153)	5,437 (4,355)	10,733 (7,420)	1,865 (1,290)	6,046 (3,276)

□ 광주시 전세피해자 인정 현황

(2025. 3.기준, 명)

연도	합 계	초월	곤지암	도척	퇴촌	오포1	오포2	신현	능평	경안	쌍령	송정	탄별	광남1	광남2
2023	31	5	-	-	3	2	4	3	5	0	0	0	4	4	1
2024	82	8	-	1	1	3	2	37	17	2	2	1	4	4	0
2025	4	-	-	-	1	-	-	-	1	1	-	-	-	1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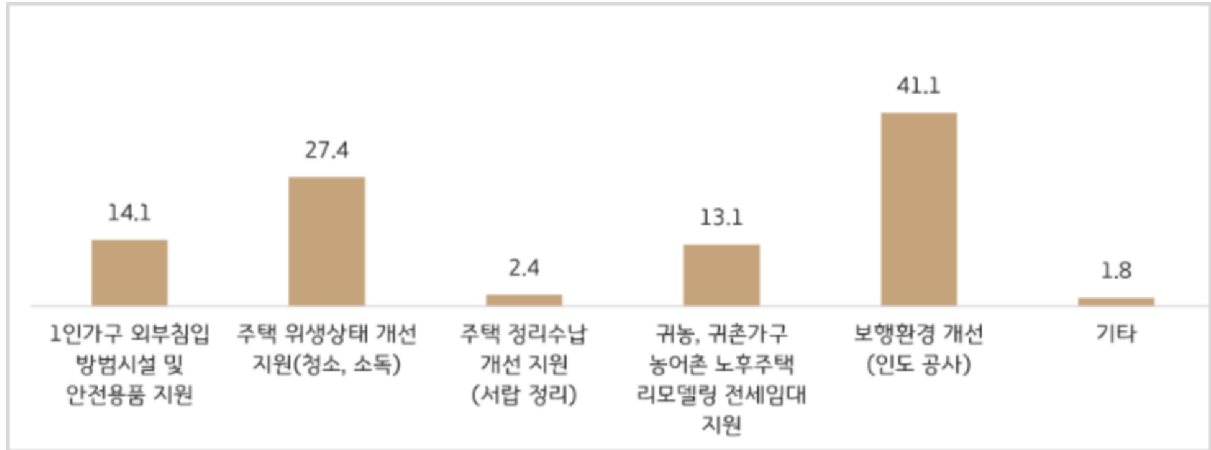
□ 경기도 시군별 전세피해자 결정 현황

(2025. 3.기준, 명)

시군명	전수 (%)	시군명	전수 (%)	시군명	전수 (%)	시군명	전수 (%)	시군명	전수 (%)
전 체	6,072 (100)								
수원시	1,919 (32)	김포시	180 (3)	하남시	112 (2)	안성시	31 (1)	동두천시	9 (-)
화성시	722 (12)	고양시	163 (3)	성남시	97 (2)	의왕시	28 (1)	파천시	2 (-)
부천시	543 (9)	안양시	156 (3)	남양주시	83 (1)	가평군	28 (-)	연천군	1 (-)
안산시	438 (7)	군포시	125 (2)	이천시	83 (1)	양주시	18 (-)		
용인시	315 (5)	파주시	121 (2)	시흥시	68 (1)	광명시	11 (-)		
오산시	273 (4)	광주시	117 (2)	구리시	57 (1)	여주시	11 (-)		
의정부시	204 (3)	평택시	114 (2)	양평군	34 (1)	포천시	9 (-)		

□ 거주환경개선 우선과제 조사결과

- 2024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 광주시 거주지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‘보행환경 개선(인도 공사)’이 41.1%로 가장 높고, ‘주택 위생상태 개선 지원(청소, 소독)’ 27.4%, ‘1인가구 외부침입 방법시설 및 안전용품 지원’ 14.1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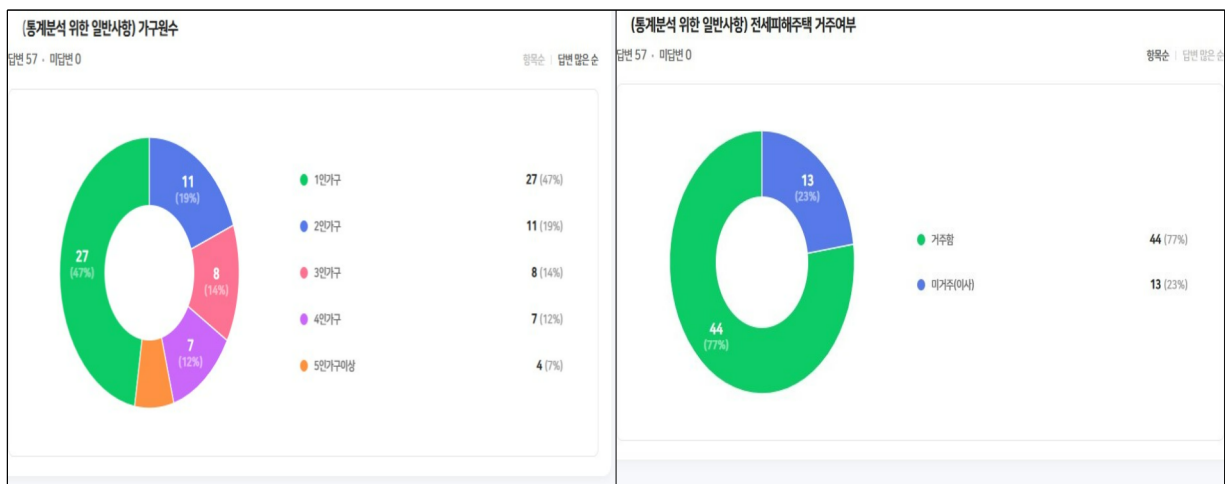


※ 2024 광주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

□ 주택임차인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¹⁾

○ 피해가구 일반 현황

- 광주시 전세사기피해 인정 가구는 1~2인가구가 66%로 청·장년층이 대부분이며, 피해가구는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신현동 및 능평동이 전체 53%를 차지하고, 대다수가 현재도 피해주택에 거주(77%)하고 있음.



1) 전세사기피해 가구 통계분석을 위한 일반사항 및 피해지원사업 온라인 수요조사 결과

- 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117가구 중 57가구 응답 결과(2024.11.6.~2025.1.31.)

○ 지원사업 수요 현황

-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(39%),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사업(21%),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(16%) 순이며,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것으로 확인됨



3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추진계획

□ 사 업 명 : 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

○ 사업대상

- 저소득 주거위기가구 : 중위소득 72%이하 차상위 가구
-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

○ 지원요건 :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○ 지원내용 : 사례관리 대상자로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지원비

연번	사업명	지원액	지원기준	비고
1	주거환경 개선비	최대 100만원	▶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물품지원	사업간 중복 불가
2	긴급 주거비	최대 100만원	▶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본인부담 보증금 및 이사비 지원	

□ 사 업 명 :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

○ 사업대상

-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
- 주택도시공사(HUG)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특별법 시행전)

○ 지원요건

-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소재지가 광주시인 경우

○ 사업종류 : 대출이자지원, 월세지원, 이사비지원

○ 지원내용

연번	사업명	지원액	지원기준	비고
1	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	최대 240만원 (월 20만원 최대12개월)	▶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	사업간 중복 불가
2	월세 지원	최대 240만원 (월 20만원 최대12개월)	▶ 전세사기피해자가 광주시 내 새로운 민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세대 (공공임대주택 입주,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 시 제외)	
3	이사비 지원	최대 100만원 (1회)	▶ 전세사기피해자가 광주시 내 타 주택 임차하여 입주한 세대	

□ 업무처리절차

사례관리대상자 접수	상 담	사례회의 및 대상자 선정	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
▶ 유선, 내방, 의뢰서등 ▶ 센터 직접 발굴	▶ 1차적 문제상담 (주거관련 문제) ▶ 2차적 문제상담 (경제, 건강, 가족 생활 등)	▶ 사례관리대상 선정 ▶ 서비스연계가구 선정 ▶ 대상자 미선정	▶ 장기, 단기목표를 설정하여 지원
주거복지센터, 읍면동	주거복지센터	주거복지센터	주거복지센터

□ 사업예산

연도	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					비고
	계	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지원		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		
		주거환경개선비지원	긴급주거비지원	전세금대출이자/월세 지원	이사비 지원	
2026	263,000천원	20,000천원 (1,000천원x20가구)	5,000천원 (1,000천원x5가구)	168,000천원 (2,400천원x70명)	70,000천원 (1,000천원x70명)	

□ 경기도 조례제정 시·군 전세사기피해지원사업 현황

연번	시군	사업개요	사업비(천원)	비고
1	파주시	▶ 반환보증 보증료지원(최대30만원) ▶ 월세지원(20만원x12개월) ▶ 소송수행경비지원(실비 최대100만원)	63,000	2024.5.~
2	수원시	▶ 대출이자 지원(15만원x6개월)		2025. 추경예정
3	기타 조례제정 시·군 자체사업 미운영 (고양, 하남, 평택, 성남, 안산, 안양, 남양주, 의왕, 과천, 광명, 이천)			

4 행정사항

-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(→보건복지부) : ~ 2025. 6. 30.
- 2026년 본예산 편성 : 2025. 12월 중
- 2026년 광주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시행 : 2026. 1. ~ 12.